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9 선고 2019가단1101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만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7,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인 C과 함께 'D'(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회사는 수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회사이며, 피고는 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15. 피고 명의 계좌로 49,995,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5. 18. 피고 대표이사 E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6. 공급자를 피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회사, 품목과 수량을 황태인열기(이하 '이 사건 황태인열기'라 한다) 2대, 공급가액을 45,450,000원, 세액을 4,545,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0.경 원고회사 작업장에 이 사건 황태인열기 1대를 납품하여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를 대리한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황태인열기 2대를 매매대금 49,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그 매매대금 49,995,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황태인열기 1대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1대를 납품하지 않아 2019.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매매계약 중 납품받지 않은 황태인열기 1대 부분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황태인열기 1대 매매대금 24,997,50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기계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 대표이사 E이 알려진 E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로 기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선급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황태인열기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G이다.

(나) H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E의 처 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선급금 명목으로 이를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황태인열기 2대를 매매대금을 49,995,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원고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원고회사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G은 H를 통하여 피고가 제작하는 이 사건 황태인열기를 소개받고 피고에게 기계매수의사를 전달한 점, 피고 대표이사 E은 2018. 3. 초순경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하청업체를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보았고 당시 원고, G, 원고회사 공장장 I를 만나 인사를 나눈 점, 그 후 원고회사 부장 J과 G이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 대표이사 E을 만난 다음 2018. 5. 15.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황태인열기 2대의 매매대금 49,995,000원이 송금된 점, 피고는 2018. 5. 16. 원고회사에 이 사건 황태인열기 2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는 2018. 5. 20. 원고회사 작업장으로 이 사건 황태인열기 1대를 납품하여 설치한 점, 이후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황태인열기의 샤프트가 부러지자, 당시 원고회사의 공장장 I가 피고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황태인열기 1대가 수리를 위하여 피고로 반품되었다가 수리 후 다시 원고회사 작업장으로 재입고된 점 등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전후의 경위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G이 아니라 원고회사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황태인열기를 매수하고 사용한다는 점, 즉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원고회사의 사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황태인열기의 매매와 관련한 피고의 거래상대방은 원고라고 인정된다.

(나)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황태인열기 2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가 1대만을 납품한 채 나머지 1대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와의 이 사건 황태인열기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이 2019.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황태인열기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기계개발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H에게 원고회사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이 H에게 원고회사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 사건 황태인열기 1대를 납품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황태인열기에 관한 매매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일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황태인열기 1대의 대금 24,997,500원(=49,995,00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급금 2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8, 9호증, 을 3호증의 2,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에게 피고의 이 사건 황태인열기를 소개한 H는 2018.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H는 2018. 5. 11.

교도소에서 E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기계양도양수할 때에 저가 드린 기계값까지 같이
합하여 정산보시면 됩니다”라고 기재한 점, H는 2018. 6.-7.경 E과 K이 면회를 왔을 당시 E에게 K과
형사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점, E이 2018. 8. 16. K에게 H의 형사합의금 24,500,000원을 지급한
점, H는 2019. 10. 20. “자신이 2017. 10.경 E에게 기계제작비용 79,000,000원을 주고
기계제작을 의뢰하였는데 2018. 4. 30. 법정구속됨에 따라, E에게 자신이 지급한 기계제작비용
79,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E이 K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고, 출소 후
E에게 기계제작대금으로 준 79,000,000원 중 K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2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5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E의 처 F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시점은 E과 K이 H를
면회하여 형사합의 문제를 의논하였던 2018. 6.-7.경 보다 앞선 2018. 5. 18.인 점, 원고가
20,000,000원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야 E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20,000,000원이 H의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H와
이 사건 황태인열기의 매매계약 이전에는 모르던 사이로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원고가 H의
형사합의금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의 대표이사 E과 H 사이의
거래관계 및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H가 피고에게 기계제작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이 피해자인 K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5. 18.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H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추후 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선급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44,997,500원(=기계 매매대금 24,997,500원+선급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